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안) 후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 규약

2007. 9

2025. 2

“개정월 명시”  
(2007.9→2025.2)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우리사주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사주”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2. “관계법령”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률과 그 시행에 관한 영 및 규칙 등을 말한다.
3. “조합계정”이라 함은 조합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조합원 개인별계정”이라 함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라 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거나 조합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7. “관계회사”라 함은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와 당해
비상장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를 말한다.

제3조(목적)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도모
2.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를 통한 재산 형성 촉진 및
주인의식 제고
3.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 지원
4. 조합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5.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 출연 자산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
6. 조합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② 조합은 전항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그 조직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우리사주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사주”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2. “관계법령”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률과 그 시행에 관한 영 및 규칙 등을 말한다.
3. “조합계정”이라 함은 조합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조합원 개인별계정”이라 함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라 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거나 조합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7. “관계회사”라 함은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와 당해
비상장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를 말한다.

제3조(목적)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도모
2.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를 통한 재산 형성 촉진 및
주인의식 제고
3.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 지원
4. 조합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5.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 출연 자산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
6. 조합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② 조합은 전항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그 조직을 이용하지
못한다.

“좌동”

제4조(조합의 운영)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사무소) 조합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내에 둔다.

제6조(공고의 방식) 조합의 공고는 당해 사무소에 게시하고, 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회사내 열람의 방식으로 한다.

### 제 2 장 조합의 운영

제7조(조합원)

①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배정 받은 자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회사 또는 관계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관계회사 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주주에 한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4. 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② 제1항의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2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8조(조합원총회)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조합의 운영)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사무소) 조합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내에 둔다.

제6조(공고의 방식) 조합의 공고는 당해 사무소에 게시하고, 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회사내 열람의 방식으로 한다.

### 제 2 장 조합의 운영

제7조(조합원)

①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배정 받은 자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회사 또는 관계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관계회사 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주주에 한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4. 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② 제1항의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2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8조(조합원총회)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좌동”

<p>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 사항이 없는 경우 제31조 제2호의 운영상황 보고서를 공고함으로써 정기 조합원총회의 개최에 갈음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p> <p>다만, 감사 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p> <p>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다만, 규약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⑤ 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9조(총회의 결의사항)</p> <p>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li> <li>2. 조합장 등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li> <li>3. 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li> <li>4. 조합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li> </ol> <p>② 조합장 등 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p> <p>③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10조(조합장)</p> <p>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이사의 직을 겸임하며, 조합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li> <li>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li> <li>3. 공문서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li> <li>4.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li> </ol> <p>② 조합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조합장의 임기는</p>	<p>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 사항이 없는 경우 제31조 제2호의 운영상황 보고서를 공고함으로써 정기 조합원총회의 개최에 갈음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p> <p>다만, 감사 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p> <p>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다만, 규약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⑤ 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9조(총회의 결의사항)</p> <p>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li> <li>2. 조합장 등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li> <li>3. 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li> <li>4. 조합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li> </ol> <p>② 조합장 등 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p> <p>③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10조(조합장)</p> <p>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이사의 직을 겸임하며, 조합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li> <li>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li> <li>3. 공문서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li> <li>4.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li> </ol> <p>② 조합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조합장의 임기는</p>	<p>“좌동”</p>
---	---	-------------

<p>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③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조합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이사회)</p> <p>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와 조합간의 약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li> <li>2. 자사주의 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조합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및 조합원을 위한 담보제공,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li> <li>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li> <li>6.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li> <li>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②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p> <p>④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이사회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12조(감사)</p> <p>①조합은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의 회계와 업무 감사</li> <li>2.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li> <li>3.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li> <li>4. 이사회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관한 보고 요구</li> <li>5. 정기 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li> </ol> <p>②감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p>	<p>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③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조합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이사회)</p> <p>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와 조합간의 약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li> <li>2. 자사주의 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조합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및 조합원을 위한 담보제공,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li> <li>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li> <li>6.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li> </ol> <p><b>7. 규약에 의거한 제 규정의 제정변경</b></p> <p><b>8.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b></p> <p>②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p> <p>④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이사회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12조(감사)</p> <p>①조합은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의 회계와 업무 감사</li> <li>2.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li> <li>3.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li> <li>4. 이사회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관한 보고 요구</li> <li>5. 정기 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li> </ol> <p>②감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p>	<p style="text-align: center;"><b>“신설” 기존”7”호→”8호” 로 변경</b></p>
--	---	---

<p>준용한다.</p> <p>제13조(대의원회)</p> <p>①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②대의원회는 조합장, 이사, 감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의 개최·소집, 결의방법 및 기타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p> <p>③대의원은 지역별로 조합원수 200명당 1명, 단수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한 인원을 각 지역별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p> <p>④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조(소유주식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행사)</p> <p>①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의결권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행사한다.</p> <p>②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자사주의 의결권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한다. 다만, 이를 제13조1항에 규정한 대의원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b></p> <p>제15조(조합의 재산 관리)</p> <p>①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②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조합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p> <p>제16조(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p> <p>①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의 출자금(조합원 상환 조건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수익금</li> <li>2.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 및 그 수익금</li> <li>3.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차입금 및 그 수익금</li> </ol>	<p>준용한다.</p> <p>제13조(대의원회)</p> <p>①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②대의원회는 조합장, 이사, 감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의 개최·소집, 결의방법 및 기타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p> <p>③대의원은 지역별로 조합원수 200명당 1명, 단수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한 인원을 각 지역별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p> <p>④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조(소유주식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행사)</p> <p>①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의결권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행사한다.</p> <p>②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자사주의 의결권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한다. 다만, 이를 제13조1항에 규정한 대의원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b></p> <p>제15조(조합의 재산 관리)</p> <p>①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②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조합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p> <p>제16조(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p> <p>①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의 출자금(조합원 상환 조건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수익금</li> <li>2.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 및 그 수익금</li> <li>3.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차입금 및 그 수익금</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	--	---

<p>4. 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및 그 수익금</p> <p>5. 그 밖의 수입금</p> <p>②조합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조합 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 만큼 이를 제외 한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li> <li>2. 자사주의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li> <li>3. 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li> <li>4. 자사주가 상장되지 않아 매입희망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li> <li>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당해 권리 행사를 위해 출자한 경우</li> <li>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조합은 조합원이 탈퇴(자격상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 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조합기금은 당해 조합원의 출자분과 그 운용수익 상당액으로 한다.</p>	<p>4. 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및 그 수익금</p> <p>5. 그 밖의 수입금</p> <p>②조합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조합 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 만큼 이를 제외 한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li> <li>2. 자사주의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li> <li>3. 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li> <li>4. 자사주가 상장되지 않아 매입희망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li> <li>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당해 권리 행사를 위해 출자한 경우</li> <li>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조합은 조합원이 탈퇴(자격상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 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조합기금은 당해 조합원의 출자분과 그 운용수익 상당액으로 한다.</p> <p><b>제16조의2(조합운영비)</b></p> <p><u>①조합은 규약 제3조(목적) 실현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 조합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조합원총회 의결을 통한 조합원으로부터의 각출</u></li> <li><u>2. 조합원 이외의 자가 조합운영비 목적으로 출연한 금품 및 그 수익금, 다만 조합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운영한다.</u></li> <li><u>3. 이사회 의결을 통한 일시적 이사들로부터의 무이자 원금상환 조건 대여금</u></li> <li><u>4. 그 밖의 조합운영비 목적으로 출연된 기타 금원.</u></li> </ol> <p><u>②제1항에 따라 조성된 조합운영비는 제16조의 조합기금과 구분하여 조합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u></p> <p><u>③제1항 1호를 통한 조합운영비 조성은 2025년 3월부터 매월 조합원 1인당            원씩 급여공제를 통해 조성한다.</u></p> <p><u>④조합운영비를 공제하는 달에 조합원의 임금이 전무하였을 때에는 조합운영비를 면제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신설”</b> <b>(조합운영비조성)</b></p>
--	---	---

제17조(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 ①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조합은 당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예탁 자사주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사주의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잔여 의무예탁 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 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또는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별 채무액의 내역을 작성·날인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 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 및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상환 및 이차지급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입금의 상환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이상 분할 상환되도록 회사 및 주주 등 상환 약정자와 서면에 의해 약정할 것
  2. 1회계연도의 차입 금액은 차입일 현재 조합원의 직전 회계연도 급여총액의 10%에 당해 차입금의 차입기간을 곱한 금액 이내이고, 차입금 총액은 차입일 현재 조합원의 직전회계연도 연간 급여총액 이내일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잔여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
  5.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의 담보권 해지를 조건으로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

제18조(주식취득의 방법 및 절차)

-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 취득
    - 가. 우선배정 주식의 청약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

제17조(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 ①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조합은 당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예탁 자사주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사주의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잔여 의무예탁 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 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또는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별 채무액의 내역을 작성·날인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 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 및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상환 및 이차지급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입금의 상환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이상 분할 상환되도록 회사 및 주주 등 상환 약정자와 서면에 의해 약정할 것
  2. 1회계연도의 차입 금액은 차입일 현재 조합원의 직전 회계연도 급여총액의 10%에 당해 차입금의 차입기간을 곱한 금액 이내이고, 차입금 총액은 차입일 현재 조합원의 직전회계연도 연간 급여총액 이내일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잔여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
  5.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의 담보권 해지를 조건으로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

제18조(주식취득의 방법 및 절차)

-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 취득
    - 가. 우선배정 주식의 청약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

“좌동”

<p>나. 회사·주주 및 시장으로부터의 매입  다. 조합원 개인별계정 및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취득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자사주 무상출연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제4호(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 5호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li> <li>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li> <li>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한 취득</li> </ol> <p>②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자사주의 취득을 위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이미 출연하여 적립된 조합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p> <p>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사주 인수 및 매입의 청약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자사주를 인수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p> <p>④ 조합이 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p> <p>제19조(취득자사주의 배분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은 우선배정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무상출연 주식 등 자사주 취득 권리 및 취득 자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배분하되,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li> <li>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당해 조합원에게 자사주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조합원 출연금을 제외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거나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에 의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게 한다.</li> <li>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 받는 주식의 배분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한도, 누적적 취득한도 및 동일업종 합산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li> </ol>	<p>나. 회사·주주 및 시장으로부터의 매입  다. 조합원 개인별계정 및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취득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자사주 무상출연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제4호(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 5호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li> <li>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li> <li>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한 취득</li> </ol> <p>②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자사주의 취득을 위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이미 출연하여 적립된 조합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p> <p>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사주 인수 및 매입의 청약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자사주를 인수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p> <p>④ 조합이 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p> <p>제19조(취득자사주의 배분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은 우선배정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무상출연 주식 등 자사주 취득 권리 및 취득 자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배분하되,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li> <li>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당해 조합원에게 자사주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조합원 출연금을 제외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거나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에 의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게 한다.</li> <li>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 받는 주식의 배분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한도, 누적적 취득한도 및 동일업종 합산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li> </ol>	<p>“좌동”</p>
--	--	-------------

<p>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의 배분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여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20조(자사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일)</p> <p>①조합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출자한 조합원 또는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p> <p>②조합은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무상출연 자사주 및 제16조 제1항 제2호·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취득일 현재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재원 조성일 현재의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제21조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p> <p>③조합은 제16조 제1항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 상환 즉시 당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무상증자 주식 포함)를 상환일 현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이 경우 상환배정 전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주식 배당을 포함한다)는 당해 자사주 취득 후 최초의 상환 배정주식에 전량 합산하여 배정한다.</p> <p>제21조(배정 자사주의 회수) 조합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자사주(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자사주와 회수된 후 당해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li> <li>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의 발생</li> <li>3. 정년예의 도달</li> <li>4.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li> <li>5.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li> </ol>	<p>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의 배분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여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20조(자사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일)</p> <p>①조합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출자한 조합원 또는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p> <p>②조합은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무상출연 자사주 및 제16조 제1항 제2호·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취득일 현재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재원 조성일 현재의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제21조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p> <p>③조합은 제16조 제1항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 상환 즉시 당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무상증자 주식 포함)를 상환일 현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이 경우 상환배정 전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주식 배당을 포함한다)는 당해 자사주 취득 후 최초의 상환 배정주식에 전량 합산하여 배정한다.</p> <p>제21조(배정 자사주의 회수) 조합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자사주(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자사주와 회수된 후 당해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li> <li>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의 발생</li> <li>3. 정년예의 도달</li> <li>4.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li> <li>5.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li> </ol>	<p>“좌동”</p>
---	---	-------------

<p style="text-align: center;">준하는 사유</p> <p>제22조(자사주의 예탁)</p> <p>①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예외 없이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수탁기관에 예탁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li> <li>2.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자사주 무상출연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제4호(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li> <li>3.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한 자사주 : 1년</li> <li>4.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자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잔여 예탁기간</li> </ol>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정에 예탁한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다.</p> <p>제23조(자사주의 인출)</p> <p>①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배정받아 예탁한 자사주는 제22조 제2항의 예탁기간이 경과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p> <p>② 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당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인출요청에 따라 인출한 자사주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p> <p>제24조(인출자사주의 우선매입)</p> <p>① 조합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한 자사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p>	<p style="text-align: center;">준하는 사유</p> <p>제22조(자사주의 예탁)</p> <p>①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예외 없이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수탁기관에 예탁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li> <li>2.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자사주 무상출연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제4호(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li> <li>3.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한 자사주 : 1년</li> <li>4.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자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잔여 예탁기간</li> </ol>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정에 예탁한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다.</p> <p>제23조(자사주의 인출)</p> <p>①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배정받아 예탁한 자사주는 제22조 제2항의 예탁기간이 경과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p> <p>② 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당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인출요청에 따라 인출한 자사주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p> <p>제24조(인출자사주의 우선매입)</p> <p>① 조합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한 자사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p>	<p>“좌동”</p>
--	--	-------------

<p>인출 전일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 가격)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인출 조합원과 합의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p> <p>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 자사주에 대한 우선매입 결정을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할 수 없으며,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매입 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출 조합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다.</p> <p>제25조(배당금등)</p> <p>①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배당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수령 즉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p> <p>②조합은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에 귀속시킨다.</p> <p>제26조(회계처리등)</p> <p>①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를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조합은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발생 사실을 회계 처리한다.</p> <p>제27조(예산 및 결산)</p> <p>①조합 이사회는 예산서(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서(사업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차대조표</li> <li>2. 손익계산서</li> <li>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li> <li>4. 사업보고서</li> </ol> <p>③이사는 정기총회일 2주일 전에 제2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p>	<p>인출 전일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 가격)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인출 조합원과 합의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p> <p>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 자사주에 대한 우선매입 결정을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할 수 없으며,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매입 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출 조합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다.</p> <p>제25조(배당금등)</p> <p>①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배당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수령 즉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p> <p>②조합은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조합에 귀속시킨다.</p> <p>제26조(회계처리등)</p> <p>①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를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조합은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발생 사실을 회계 처리한다.</p> <p>제27조(예산 및 결산)</p> <p>①조합 이사회는 예산서(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서(사업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차대조표</li> <li>2. 손익계산서</li> <li>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li> <li>4. 사업보고서</li> </ol> <p>③이사는 정기총회일 2주일 전에 제2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p>	<p>“좌동”</p>
--	--	-------------

제 4 장 보 칙

제28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

- ①조합은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5인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한다.
- ④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다

제2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 1. 조합원 명부
  - 2. 조합 규약 및 회의록
  -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 4. 회계 장부 및 서류
  - 5. 조합 및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 ②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의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한다.

- 1. 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 3. 자사주 배분 및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상 중요한 사항

제31조(보고의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정한 사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의 보고
- 2.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 장 보 칙

제28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

- ①조합은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5인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한다.
- ④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다

제2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 1. 조합원 명부
  - 2. 조합 규약 및 회의록
  -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 4. 회계 장부 및 서류
  - 5. 조합 및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 ②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의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한다.

- 1. 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 3. 자사주 배분 및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상 중요한 사항

제31조(보고의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정한 사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의 보고
- 2.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좌동”

제15조 제6항에 의한 그 운영 상황의 보고

제32조(조합의 해산)

-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파산
  2. 사업폐지를 위한 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에 따른 회사의 해산
  4. 회사가 관계회사로서 지배하는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예탁하고 있거나 부여 받은 우리 사주 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기금 등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가 있는 경우. 다만,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에 대하여 조합 존속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1. 조합원계정의 자사주 및 조합원 출연 기금 :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
  2. 조합계정의 자사주 및 제1호 이외의 기금 : 제19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조합원에게 귀속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 :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

제33조(관계법령의 준수의무) 조합은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총회시 임원의 선출) 창립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조합장, 이사 및 감사는 노동조합 또는 회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 제6항에 의한 그 운영 상황의 보고

제32조(조합의 해산)

-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파산
  2. 사업폐지를 위한 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에 따른 회사의 해산
  4. 회사가 관계회사로서 지배하는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예탁하고 있거나 부여 받은 우리 사주 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기금 등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가 있는 경우. 다만, 노동부장관의 해산결정 공고에 대하여 조합 존속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1. 조합원계정의 자사주 및 조합원 출연 기금 :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
  2. 조합계정의 자사주 및 제1호 이외의 기금 : 제19조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조합원에게 귀속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 :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

제33조(관계법령의 준수의무) 조합은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총회시 임원의 선출) 창립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조합장, 이사 및 감사는 노동조합 또는 회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좌동”

<p>제3조(사무이관 및 경과조치)</p> <p>① 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때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제반 사무를 이관 받도록 한다.</p> <p>②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우리사주조합의 행위로 본다.</p>	<p>제3조(사무이관 및 경과조치)</p> <p>① 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때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제반 사무를 이관 받도록 한다.</p> <p>②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우리사주조합의 행위로 본다.</p> <p><u>제4조(개정) 이 규약은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u></p>	<p>“개정시행일 명시” (2025.2.20부터)</p>
--	---	-------------------------------------